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http://www.kihf.or.kr	보도자료		 더 가까이 더 다양하게 가족서비스를 선도하는 Kihf
보도일시	2020. 12. 23.(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2020. 12. 22.(화) 오후 12:00 이후		총 4쪽
배 포 일자	2020. 12. 22.(화)	담당부서	가족친화사업본부 가족사업홍보부
담당부장	허지은 (02-3479-7770)	담 당 자	이주현 (02-3479-777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를 한 눈에! -

「양육자·비양육자의 상황을 고려한 양육비 합의」

“비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상호 합의를 통해 정기적 지급으로 이끈다”

피신청인(비양육자) K씨는 이혼 후 신청인(양육자) L씨에게 비정기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양육자) L씨는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매달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희망하였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러 차례 피신청인(비양육자) K씨에게 자녀양육에 있어 양육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신청인(비양육자) K씨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이 아닌 상호합의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피신청인(비양육자) K씨는 합의 이후 신청인(양육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되거나 면접교섭을 통해 비양육부·모-자녀 간 관계가 개선된 사례를 모은 ‘2020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 이번 사례집에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모니터링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 지원 등 총 20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 특히, 법률추심을 포함한 법적조치 전 지속적 상담과 협의과정을 통해 양육비 증액에 합의한 사례, 법적 절차와 설득중재를 병행하여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은 사례 등 양육자-비양육자 간의 이해와 합의가 자발적 양육비 이행에 동력이 되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실질적 양육자인 고모가 조카 양육의 정당성을 확보해 과거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소원했던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토대가 되어 준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 본 사례집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가정·지방법원, 법률구조기관,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에 오디오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SNS 채널>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ihfkorea>
-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kihfkorea>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ihfkorea>
- 블로그 <http://blog.naver.com/pinacho1>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2020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 양육비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1】 2020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2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카 양육의 정당성을 확보해 과거 양육비를 받아낸다”

□ 사례자 정보

- 신청인(양육자, 고모) J씨, 피신청인(비양육자, 어머니) S씨
- 자녀 : 1명, 협의이혼
- 특이사항 :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로 지정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신청인(양육자, 고모)이 조카를 양육하고 있었음. 협의이혼 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던 청구인이 양육비심판청구에서 승소하는 것이 이례적임

□ 신청동기

- 부재한 아버지를 대신해 조카의 양육자로 살아왔던 신청인(고모)이 피신청인(비양육자, 어머니)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함

□ 지원내용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심판청구 소를 제기하자, 피신청인(비양육자, 어머니)인 S씨가 청구권자인 신청인(양육자, 고모) J씨가 양육비 심판청구 적격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함
-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인(양육자, 고모) J씨가 자녀를 오랜 기간 양육한 점, 자녀가 신청인(양육자, 고모)의 양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한 점, 피신청인(비양육자, 어머니) S씨가 신청인(양육자, 고모) J씨 양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치지 않아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의 사유를 근거로 피신청인(비양육자, 어머니)이 일시금으로 과거양육비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 지원결과

- 양육비 조정조서대로 피신청인(어머니) S씨는 20년 동안 홀로 조카를 양육해온 신청인(고모)에게 과거양육비 2,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계좌 이체함

“면접교섭 방식을 중재해 양육비 지급의 갈등을 해결하다”

□ 사례자 정보

- 신청인(비양육자) S씨, 피신청인(양육자) K씨
- 자녀 : 1명, 협의이혼
- 특이사항 : 피신청인(양육자) K씨는 자녀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소극적이었고, 신청인(비양육자) S씨는 면접교섭을 피신청인(양육자) K씨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동기

-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신청인(비양육자) S씨가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한 피신청인(양육자) K씨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신청함

□ 지원내용

- 면접교섭 중재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자녀, 신청인(비양육자) S씨, 피신청인(양육자) K씨가 갖고 있는 면접교섭에 관한 상이한 바람을 확인. 이 과정에서 자녀와 피신청인(양육자) K씨와도 갈등이 있었으며, 자녀가 신청인(비양육자) S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점을 확인. 이에 학령기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의 심리상황 및 스케줄을 중점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중재함
- 이러한 노력으로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자녀 및 당사자 간 혼란과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며, 면접교섭을 통해 피신청인(양육자) K씨와 자녀의 잦은 갈등이 줄어들었고, 자녀도 신청인(비양육자) S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학교에 잘 적응하는 긍정적 결과를 이끔

□ 지원결과

- 면접교섭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청인(비양육자) S씨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이 진행되었고, 이후 자발적 면접교섭이 가능해졌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음